



THA THERE!

보도시점

2024. 9. 9.(월) 16:00

배포

2024. 9. 9.(월)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 < 추진 배경 >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입법 방향 >

### ●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개정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신생기업(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인 경우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 ❷ 갑을 분야(플랫폼-입점업체): 「대규모유통업법」개정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하였다.

우선「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한)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이상, ▲(2한)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다.

먼저,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1만)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만)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한)100% 또는 ▲(2한)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그 밖에, 현행「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 계약서 작성·교부(제6조), 표준거래계약서(제6조의2),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한편,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붙임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형주 (044-200-4300)
		담당자	서기관	김하리 (044-200-4301)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담당자	사무관	권영재 (044-200-4371)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균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임용남 (044-200-4961)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2024. 9. 9.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Ⅱ. 독과점 분야 ⇨ 「공정거래법」개정 ······· 1
Ⅲ. 갑을 분야 ⇨ 「대규모유통업법」개정 3

## 추진배경 및 경과

- □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력),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음
  - o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
  - ⇒ 기존 「공정거래법」집행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대비 **뒷북** 대응이 되어 경쟁질서 회복에 한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또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법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 (티몬·위메프) 대금 미지급 및 정산자금 유용,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 ⇒ 티메프 등 **유통 플랫폼**은 정산기한, 대금관리 등 법적 규율을 받지 않고 있어, **乙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요구 强

# │ 독과점 분야 (플랫폼 경쟁촉진) ⇨ 「공정거래법」개정

- □ 反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제도보강으로 시장 경쟁질서 보호
  - **①** (규율대상)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sup>\*</sup>]
    - \* 당초 EU-DMA 型 지배적플랫폼 '**사전지정'** 제도도입 방침 발표(국무회의, '23.12.19.) →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추정' 대안** 마련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입증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공정거래법 (1社50%↑) 보다 **독점력이 공고한**(1社60%↑)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 또한, 年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여 스타트업 등의 우려 불식< 사후 추정 요건 >
  - ①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 OR ②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 2천만명 이상
  -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작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 4조원 미만시 제외

- ② (규율분야)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 **③** (규율내용)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
  -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행위를 금지

#### < 4대 반경쟁행위 주요내용 >

- ①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
  - ▶ <u>알고리즘을 임의로 설정, 변경하는 방법</u> 등으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 또는 배열하는 행위
  - ▶ 이용 사업자가 <u>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비공개 정보</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이용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
- ②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u>필수적이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u>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하여 함께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u>다른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거나</u> <u>다른 선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u> 행위
  - ▶ <u>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u>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u>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배타적으로 장치 또는 기기에 사전 설치</u>하거나, 장치 또는 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배타적으로 장치 또는 기기에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행위
- ③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
  - ▶ 이용자와 <u>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u>하거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u>경제적 유인을 제공함</u> 으로써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④ (최혜대우요구)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
  - ▶ 이용 사업자에게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u>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u> <u>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u>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 4 (입증책임) 지배적 플랫폼의 시장 內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책임 강화
  - \* <항변권 보장> ^경쟁제한성 無 or ^정보보호 및 안전 확보 등
- **⑤** (제재수단)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매출액 6%→8%) 등
  - **엄격한 요건**\* 下, 반경쟁행위를 **임시 중지**하여 후발 플랫폼 퇴출 방지
    - \*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의 명백한 의심 +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 또는 다른 플랫폼· 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로 예방의 긴급 필요성 인정
  -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관련 매출액의 8%로 과징금 상한 설정
    - \* 現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 관련 매출액의 6% EU-독일·영국(입법完)·미국(계류中) 과징금 상한 : 전세계 또는 자국(미국) 내 법인 매출액의 10%

# │ 갑을 분야 (플랫폼-입점업체) ⇨ 「대규모유통업법」개정

- □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Z사업자 보호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하여 대금정산, 대금 별도관리, 공정성·투명성 관련 조항 적용
  -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목소리와 플랫폼의 혁신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 및 규제 수준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
  - ① (법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하되 세부기준은 복수안 마련
  - (제1안) 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年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 \*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
  - (제2안) 年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年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 \* 중소플랫폼 규제로 인한 혁신저해 우려 등을 고려

- ② (정산기준일·기한) 전통적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통적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게 규정하되, 세부기준은 복수안 마련
  - (제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 \* 온라인 중개거래는 판매·관리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고 정산절차도 단순하여 전통적 소매업(40일 정산 관행 형성)에 비해 실제 정산주기(평균 22.9일)가 짧음
  - \*\* 다만, 이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 (40일→30일→20일(10일))
  - (제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 규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정산기한보다 다소 축소하여 규정
- ③ (대금 별도관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등)하도록 의무 부과
  - (제1안)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
    - \* 판매대금 관리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 다만 이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별도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60%→80%→100%)
  - (제2안)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
    - \* 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유동성 보유가 필요한 유통업체의 특성을 고려
- ④ (그 밖의 규정) 기존「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거래계약서(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준용
  -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 준용
    - \*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 **⑤** (시행시기·경과규정)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 상향
- ※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